#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58

발의연월일: 2023. 2. 28.

발 의 자:이용호·장동혁·구자근

박덕흠 • 최영희 • 김예지

이만희 • 정우택 • 양금희

정운천 의원(10인)

#### 제안이유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최근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관련 법·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통문화산업과 같이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등은 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한 개별 진흥법이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은 그러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조직·예산·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전통문화산업은 한류의 원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 루어진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문 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이에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 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 거. 국가는 전통문화산업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7 조).
-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개발·판매·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 그램의 개발·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19

조).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 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가. 전통문화예술: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관련된 것
    - 나. 전통문화양식: 전통의상, 전통식품, 전통건축, 전통공예, 전통 무예. 전통한지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
  -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3. 전통문화산업의 분야별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4.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6.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8.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9.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 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산업진 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 관련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 2.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해외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조사 · 연구
  - 3. 전통문화산업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
  - 4.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 5.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재· 재료 및 처리기법 등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표준화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 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 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품질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 등의 품목·기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조사 · 연구 · 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 2.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 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17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 ① 국가는 전통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통문화산업관련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 및 개발, 판매,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 광·교육·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교육공간의 설치 등과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전통문화

산업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